



해외 경쟁정책 동향

미국

법무부, SGL Carbon에 의한 Carbide/Graphite Group의 흑연전극에 관한 자산취득 금지를 구하는 제소

본 건 취득은 대형흑연전극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법무부는 금일 SGL Carbon AG 와 이의 미국자회사인 SGL Carbon L.L.C.가 파산법원에 의해 경매에 부쳐진 Carbide/Graphite Group의 자산취득을 금지하기 위해 반트러스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본 건 취득으로 제조업자 3사의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형흑연전극에 대한 조정이 쉬워지고, 본 건 취득은 대형 흑연전극의 제조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고 하고 있다.

SGL Carbon과 Carbide/Graphite사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직경 18인치 이상의 대형흑연전극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업자 4개사 중의 2개사이다.

피츠버그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제소에 의하면 근래의 흑연전극 제조 업자간의 공모 때문에 본 건 취득후 경쟁자간의 조정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법무부는 펜실베니아 서부 지역 연방검찰국의 도움을 받아 경매 과정에서 SGL이 취득에 성공한 경우에, 확실하게 당해 취득의 금지명령을 구하는 본 건 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본 건의 심사에 있어서 펜실베니아주 법무부장관 이하 반트러스트 집행당국과 긴밀히 협력했다.

「본 건 취득이 금지되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대형흑연전극의 가격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동 시장에서 경쟁자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공동해 왔다는 경위가 있다. 본 건 취득이 행해진 경우 취득후의 제조업자가 공모행위를 부활시키는 인센티브와 능력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R. Hewitt Pate 법무부 반트러스트 국장 임시대행은 언급했다.

Carbide/Graphite Group은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법인이고, 피츠버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동사는 흑연전극을 제조하는데, 2001년의 경

우 매출액이 6,450만 달러였다. 동사는 2001년 9월 펜실베니아 서부지역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조의 적용신청을 했다.

SGL AG는 독일법에 따라 설립되고, 독일 Wiesboden에 본사를 두고 있다. 동사는 유럽, 북미, 아시아 및 남미에 판매망과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다. SGL Carbon L.L.C.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샤롯에 본사를 두고 있다. SGL AG의 보고에 의하면 2001년의 경우 동 사의 흑연전극의 전세계적 매출액은 5억 4,660만 달러였다.

2003. 4. 15. 미국법무부 발표문
(『월간 공정취인』 2003년 5월호 참고)

FTC와 FDA, 해외 광고행위 제소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지 않은 산호칼슘제를 판매한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FTC와 식품의약청(이하 FDA)이 제품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건강식이나 의약품으로 팔아온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그 동안 조사한 결과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Kevin Trudeau, Robert Barefoot, Shop America (USA), L.L.C. 및 Deonna Enterprises, Inc. 등은 허위 또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oral Calcium Supreme이라는 제품이 암은 물론이고 심장질환 등을 포함한 기타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TC는 이러한 주장들이 칼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피고 회사들은 여성 방송, 코메디 방송 등 여러 케이블 방송과 소책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제품을 판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그동안 식이요법 제품에 대한 허위 표시광고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사건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것이고, 특히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중병을 표적으로 한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법집행을 할 것이다. 한계를 넘어서는 판매업자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것이다」라고 FTC 소비자보호국장인 Howard Beales씨는 경고했다.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FTC는 피고들 중의 하나인 Kevin Trudeau씨를 상대로 1998년 연방법원이 내린 명령 위반을 이유로 별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연방법원은 Kevin Trudeau에게 어떤 제품의 효과에 관하여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지 말 것을 명령했었다. 그런데 Kevin Trudeau씨는 이를 위반하고 Coral Calcium Supreme에 관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했으며, 또한 Biotaape이라는 제품이 심한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는 역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며 이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 개의 소송에서 FTC는 이들이 허위의 판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증지 명령과 그들의 자산동결을 요구했다.

한편 FTC와 FDA는 인터넷을 통해 산호칼슘 제품이 암이나 기타 질병을 치료한다고 광고하며 이 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번 주에만 수십 장의 경고장을 이미 발송했는데, 이 경고장에서 FTC는 그 제품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을 밝히면서, 이를 치료제로 판매하는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법에 위반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와 같은 허위 또는 기망적인 표시를 즉시 웹사이트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FDA도 입증되지 않은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 식품·의약법에 위반

된다는 점을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공지했다.

「FDA와 FTC는 건강관련제품들에 대한 허위의 표시광고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할 것이며, 특히 공중에게 급속하게 전파될 우려가 있는 인터넷을 통한 기망적인 판매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라고 FDA의 Mark B. McClellan 위원은 말했다.

2003. 6. 10. 연방거래위원회

■ 사기행위를 한 캐나다 신용카드 사업자 영업금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화해안의 일환으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회사는 선불신용카드 판매업이 금지되고 소비자들에게 130만 달러의 배상을 해주게 되었다. FTC는 지난 2002년 5월 연방법원에 Efficient Telesales Services Inc.를 U.S. Credit Services사 등과 함께 기소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신용불량자이거나 무자격자인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리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하겠다고 하고서는 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FTC는 이들이 2%, 2.9% 또는 3.9%의 이율로 신용서비스 한도가 2,500달러에서 5,000달러에 이르면서 연회비는 전혀 없는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를 발급해 주겠다고 소비자들에게 말하면서, 카드발급을 위해 서는 발급 수수료 199달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비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카드 대신 신용회복이나 신용사기 방지 방법 등의 신용관련 정보만을 발송했다. FTC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한 번도 신용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었으며,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등을 발급할 권한도 없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민들만을 상대로 이러한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 3백만 달러가 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담당재판부는 이 회사들이 미리 어떠한 형태로든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13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아울러 FTC가 피고 회사의 명령 준수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각종 기록들을 남길 것도 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경을 넘는 법집행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FTC는 이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있어서 토론토 관계당국을 포함하여 캐나다 경쟁국 등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2003. 6. 2. 연방거래위원회

■ 신임 독점금지부 부국장 임명

R. Hewitt Pate 독점금지국장 직무대행은 최근 J. Bruce McDonald 가 규제문제를 다룰 새로운 부국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항공, 운수, 에너지 및 기타 규제산업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규제산업에 있어서 독점금지에 관한 뛰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Pate 국장 직무대행은 말하면서, 이번 인사로 인해 독점금지국의 업무 수행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McDonald 신임 부국장은 1990년 아래 휴스턴에 위치한 Baker Botts L.L.P. 법률사무소의 독점금지팀의 파트너로 일해 왔다. 그 이전에는 워싱턴 D.C.의 Jones, Day, Reavis & Pogue에서 독점금지 사건을 다루어 왔다. 이 곳에서 그는 항공, 운송, 에너지, 정유, 화학, 보건 및 통신 등 다양한 규제산업 분야에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쌓았다.

그는 또한 각종 세미나 등에서 독점금지 관련 분야에 관한 연설이나 발표를 했으며, 휴스턴 대학에서는 겸임교수로서 독점금지 및 거래 규제에 관한 강의를 하기도 했다. McDonald씨는 1985년 텍사스 오스틴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J.D. 과정을 마쳤으며, 1997년에는 런던대학교에서 국제법과 유럽 경

쟁법을 연구하였다.

그는 현재 텍사스와 컬럼비아주 변호사이며, 변호사협회 독점금지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작년에는 휴스턴 변호사협회 독점금지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2003. 6. 11. 연방법무부

■ DOJ, 비타민 시장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나서

달라스 연방대陪심은 최근 DuCoa, L.P.의 대표였던 자를 기소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이 회사는 전국적 규모의 가격고정 공모에 참가했을 뿐 아니라 콜린 클로르(choline chloride) 업계에서 지역할당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방법부는 발표했다.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되는 콜린 클로르는 일반적으로는 비타민 B4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이는 동물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달라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Daniel T. Rose씨는 1997년 8월부터 1998년 9월 29일 까지 콜린 클로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공모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이 독점금지국 달라스 지방사무소에서 각종 비타민 시장을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로 나타난 8



번째 기소이다』라고 독점금지국장 권한 대행은 밝혔다.

Rose씨는 콜린 클로르의 가격과 수량에 관한 담합에 참가하고, 콜린 클로르의 가격을 책정하였으며, 수요자들을 할당하고 콜린 클로르 공급 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면법 제1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5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법에서 정한 벌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벌금의 최고 한도는 이러한 금액의 2배까지로 증액될 수 있다.

현재 독점금지국 달拉斯 지방사무소와 FBI는 비타민 시장을 계속 조사 중에 있다.

2003. 6. 4. 연방법무부

EU

유럽위원회 경쟁총국의 재편성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금일 13년만에 최대 규모의 경쟁총국의 재편성을 결정했다. 경쟁총국의 재편성은 EU의 반트러스트법의 현대화(이사회규칙 제1/2003호의 채택 등)와 합병규제 및 국가보조규제의 개혁을 근거로,

2004년 5월 1일 EU 확대에 앞서 유럽위원회의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어졌다. 합병 및 반트러스트 사안의 처리에 관한 임무는 점진적으로 분야별 국(局)에 통합된다. 국가보조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고, 위법한 보조의 원상회복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집행 단위(Unit)가 창설된다.

『이번의 재편성은 25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EU에 있어서 유럽위원회가 경쟁법을 집행하는 것을 쉽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집행활동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번의 재편성에 의해 반트러스트 단위(현재의 C~F국 단위)가 가지는 각각의 특정 분야별 전문지식이 한층 활용됨과 아울러 기업 합병 Task Force(현재의 B국)가 발전시켜 온 best practice가 경쟁총국 전체에 보급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번의 재편성은 우리들과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에 있어서의 견고한 기초를 확립하는 것이다』라고 마리오 몬테 경쟁정책담당 위원은 언급했다.

새로운 경쟁총국의 조직은 합병규제에 있어서 분야별 조직을 기초로 한다. 합병규제 단위는 4개의 각 분야별 국으로 통합된다. 축소된 기업 합병 T/F는 경쟁총국에서의 합병규제의 효과적인 조정을 확보하기 위해 존치된다. 반트러스트 단위 및 국가

보조 단위는 각각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재편성된다. 최종적으로 국가보조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단위가 창설된다. 2004년 5월까지 각 분야별 중점화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오게 되면 이행은 완료하게 된다. 그 후 합병사안은 5개의 각 분야별 반트러스트 및 합병 담당국에 의해 처리된다.

이번의 재편성은 회원국의 경쟁당국 및 산업체와 각 분야에서의 중요한 발전에 대해서 대화할 때 매우 중요한, 각 분야의 시장에 관한 지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쟁총국의 한정된 인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합병 및 반트러스트 심사에 보다 유연하게 인원을 배분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의 재편성은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의 강화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설되는 경쟁총국직속의 chief competition economist가 통솔하는 팀의 창설은 총국내에 있어서 경제학의 전문지식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패널」의 절차에 의해 「신선한 눈」을 가진 팀이 주요한 경쟁사안에 관한 결정에 대해 조직적으로 내부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의 과제

경쟁총국의 이후의 과제 중 주요한 것은 다음의 4가지이다 :

-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 소정의 반트러스트규칙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절차규칙을 시행할 것 (2004년 5월 1일)
 - 마찬가지로 2004년 5월 1일의 시행이 요망되는 합병규칙개정안에 대해 계속해서 이사회와 협의할 것
 - 절차를 합리화하고 가장 경쟁을 왜곡할 것 같은 국가보조에 중점을 두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국가보조분야에 있어서 포괄적인 개혁폐기지를 책정할 것(2004년중)
 - 2004년의 EU 확대는 경쟁총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1년에 행해진 분석에 의하면 사업량이 30~4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특히 합병규제 및 국가보조규제의 분야에 있어 제1심법원의 최근의 판결에 있어서도 유럽위원회가 부정적인 결정을 채택할 때 지는 입증부담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것을 근거로 결정의 기초가 되는 법적 및 경제적 분석의 정밀성 및 객관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적정한 절차(due-process)의 존중을 보증하기 위해 내부절차를 재검토하고 강화하려고 한다.

경쟁총국에 대한 기초정보

기업합병 T/F는 1990년 유럽합병 규제규칙의 시행과 더불어 창설되어,

신고된 2,000건 이상의 합병안(1990~2002년 전체 신고건수는 2,185건)에 대해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한안에 심사를 해왔다. 합병안의 95% 이상은 소위 제1단계심사에 있어서 1개월 이내에 승인된다. 1990년이래 금지된 합병안은 18건뿐이고, 전체 신고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업합병 T/F의 규모는 창설이래 착실히 확대되어 왔지만, 년간 신고 건수의 증가에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2002년의 신고건수(277건)는 1995년의 건수(110건)의 2배를 넘는다. 현재 기업합병 T/F의 직원 총수는 96명이고, 그 중 학사급의 사건 담당관(개별 사안의 심사담당관)은 약 60명이다.

현재 반트러스트 담당의 분야별 국(C국 : 우편, 정보, 통신, 소비자용 전자기기 등, D국 : 은행, 보험, 운수, 유통업 등, E국 : 기초산업, 에너지, 철강 등, F국 : 섬유, 화장품, 자동차 등 운송기기, 농업, 식품, 의약품 등)은 합해서 약 23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대략 160명이 학사급의 사건 담당관이다. 경쟁총국에 있어서 국가보조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약 135명인데 그 중 대략 85명이 학사급 사건 담당관이다. 경쟁총국은 전부 600명을 조금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합병 및 반트러스트 업무에 관한 재편성의 최초

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업합병 T/F의 대략 4분의 1의 직원이 분야별 반트러스트 담당국내의 합병 단위에 분산해서 재배치 된다.

2003. 4. 30. 유럽위원회 발표문

(「월간 공정취인」 2003년 5월호 참고)

EU위원회, 정유사간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오스트리아 OMV사가 독일의 BP사의 정유사업 부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EU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어떠한 경쟁제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OMV 그룹은 석유제품의 생산, 정제 및 주유소 운영을 포함한 유통사업 뿐만 아니라, 화학 산업과 천연가스 산업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BP사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에 진출해 있는 그룹이다.

이번 인수로 인해 주로 남독일에 있는 BP 소유의 247개의 주유소, 바이에른 정유소 및 송유관 운영사업 등을 OMV가 취득하게 된다. 이는 BP와 E.ON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을 매각하라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EU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BP와 OMV가 남독일 지역에



서 단지 제한적으로만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시장이 원유, 휘발유 소매업 및 중유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경쟁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항공기 연료 시장에서 OMV는 뷔헨 공항에 대해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나 잠재적인 면에서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번 인수건으로 독일에서의 경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2003. 6. 12. EU위원회

유통부문을 기업결합을 하기 전에 막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고 어려운 논쟁 끝에 특히 유럽에너지 시장의 자유화를 앞둔 시점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사업자가 탄생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에 매우 만족스럽다. 이는 오스트리아 소비자들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Mario Monti 경쟁위원회 위원은 말했다.

지난 12월 20일 위원회에 제출한 기업결합안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전력거래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경제활동을 통합하는 한편, 매년 시간당 4기가와트가 넘는 전력을 대규모 기업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PT와 E&S라는 두 개의 새로운 합작회사들을 설립하여 전력과 유통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기업결합을 통해 탄생되는 새로운 기업은 유럽연합의 전력시장에서 10번째로 거대한 사업자가 된다.

상세한 조사를 거쳐, 위원회는 이러한 기업결합이 오스트리아 내에서 대규모 소비자들에 대한 공급시장 및 소규모 유통과 소규모 소비자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거나 강화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이들 회사의 결합 시장점유율은 매우 높아서, 소비자들의 유형에 따라 구별된 시장에서 약 50%~75%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냈다. 경쟁

적 위치에 있던 각 지역별 전력회사들이 사라지고, 이들이 오스트리아 전력회사와 연계를 맺게 됨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된 것이다.

한편 EU위원회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지리적 관련시장을 고려할 때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 독일과 어떤 연관을 가질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더욱이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시장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개연성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시장지배력이 형성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위원회는 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오스트리아 전력회사는 오스트리아내 대규모 소비자 시장에서 10% 내지 15%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APC사의 지분 55%를 매각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소비자들에 대한 공급과 관련해서는, 수력발전 50%를 포함하여 시간당 450기가와트의 전력량을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EnergieAllianz는 지역 에너지 공급업자인 EVN AG, Wien Energie GmbH, Energie AG Oberösterreich, Bewag 및 Linz AG 등 5개 회사들이 에너지, 통신, 운송 및 케이블 방송 서비스를 위해 만든 조직이며, 오스트리아 전력회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2003. 6. 11. EU위원회

EU위원회, 전력회사간 기업결합에 조건부 승인

EU위원회는 오스트리아 유수의 전력회사인 오스트리아 전력회사(Osterreichische Elektrizitätswirtschafts-AG)와 5개의 지역 전력회사들의 단체인 EnergieAllianz 간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 기업결합 계획은 특히 대규모 소비자들에 대한 공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거나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러한 조건들 중의 하나는 오스트리아 전력회사의 지배를 받게 될 대규모 소비자에 대한

EU위원회, 프랑스 출판업자간의 주식취득에 대한 조사에 착수

EU위원회는 프랑스의 Lagardere 그룹이 Vivendi Universal Publishing(이하 VUP)의 주식취득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두 그룹은 프랑스어로 간행되는 도서를 출판하는 대형 출판업자들이다. 현재 위원회는 이들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이 도서출판 및 유통·판매 시장을 포함한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체적인 조사절차가 개시되면서 이번 사건은 프랑스 경쟁당국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프랑스 정부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기업결합 통제규칙상 회원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VUP는 프랑스어로 발간되는 도서의 발간, 마케팅 및 유통에 있어서 유럽내 최대 규모의 회사이며, Lagardere는 VUP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제2위 사업자이다. Lagardere는 또한 도서, TV 및 라디오 소매사업과 함께, 신문의 발간 및 유통사업도 경영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Lagardere는 VUP의 유럽내 전체 자산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한 권의 책이 저자에게로부터 독자

들에게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출판업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1차적인 조사를 통해서 Lagardere와 VUP는 모두 유럽내 프랑스어권의 국가들에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초기 조사단계에서 위원회는 도서와 관련된 일련의 시장들 중 세 부분 즉, 판권의 매매, 유통 및 출판업자의 소매업자에 대한 도서 판매에서 반경쟁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러한 시장들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거나 강화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결합된 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시장들에서 공급을 감소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위원회는 VUP와 Lagardere의 지위가 결합되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경쟁자들의 지위가 약화되지 않을지의 여부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차원에서 기업결합에 대한 조사는 법에서 정한 일정대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문제된 기업결합에 대한 완전한 정보(신고)를 위원회가 입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기업결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지

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6주까지로 연장된다. 만일 위원회가 이 기업결합이 단일 유럽시장에서의 경쟁규범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승인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003. 6. 5. EU위원회

독일

연방카르텔청, 독일 출판사간 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고조치

연방카르텔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출판사 그룹인 Ullstein Heyne List와 베텔스만 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출판사인 Random House간의 기업결합 계획은 독일내 페이퍼백(paperback) 형식의 일반 정보문학 및 소설류 부문에서 베텔스만 그룹의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이들 회사에 대해서 경고장이 지난 5월 22일 발부되었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이 경고장이 최종적인 결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한편으로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회사들간의 기업결합이 독일 경쟁법상 허용되기 어려



을 것이라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연방카르텔청은 페이퍼백 형식의 출판을 다른 형태의 도서 시장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시장으로 보았다. 특히 페이퍼백 출판은 크기, 형태 및 디자인 등에 있어서 하드커버(hard cover)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용도 면에서도 하드커버는 초판 인쇄에 사용되는데 비해 페이퍼백은 2판이나 3판에 이용되며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시장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베텔스만은 관련시장에서 1/3의 시장점유율을 획득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내 페이퍼백 출판시장의 리더가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두 출판 그룹간의 기업결합이 허용되는 경우, 베텔스만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자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3. 5. 22. 연방카르텔청

일본

■ 공정위, 새로운 시장구조지표 활용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축적한 시장집중도와 시장점유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이나 가격 등의 시장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는 지표로서 구매자측의 집중도와 이번에 새롭게 고안된 기업의 순위와 시장점유율 변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를 포함한 시장구조 등의 요인이 기업 이익률이나 가격 등의 시장성과에 주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시장집중도 등의 시장구조가 기업 이익률이나 가격 등의 시장성과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많은 실증분석을 해오고 있다. 이번에 시장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는 지표 중에서 지금까지의 실증분석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구매자측의 시장구조” 및 “순위 또는 시장점유율의 변동의 정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전부터 축적해 온 생산·출하 집중도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다음에서 소개하는 구매자 집중도 및 순위 또는 시장점유율의 변동지수를 수치화하여 새롭게 이러한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첫째로 구매자집중도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과거 18년간 계속하여 데이터의 이용이 가능한 52개 품목에 대해 구매자 집중도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등 최종재에 속하는 품목에서는 구매자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중간재에 속하는 품목에서는 구매자집중도가 높은 품목(예: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부터 낮은 품목(예: 건축재료)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급자측과 구매자측의 상대적인 힘관계를 나타내는 구매자 상대지표(구매자 집중도를 공급자의 시장점유율과 나눈 값)를 이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는데, 공급자에 대한 구매자의 힘이 강할수록 공급자측의 기업이익률은 낮아지는 등 구매자측의 시장구조가 공급자측의 기업이익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태가 나타났다.

둘째로 순위·시장점유율 지수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2시점 순위변동지수(스피아만 순위상관계수), 2시점 시장점유율 변동지수(새로운 지표), 다시점 순위변동지수(켄들순위 일치계수), 다시점 시장점유율 변동지수(새로운 지표)의 각 지수를 수치화 해 본 결과, 다시점 시장점유율 변동지수가 가장 정확하게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상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 12년간 계속하여

데이터의 이용이 가능한 145개 품목에 대해 순위 및 시장점유율 변동지수를 측정했는데, 순위 및 시장점유율 변동이 거의 없는 품목에는 고도 과점 업종이나 가격의 동조적 인상이 된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다시점 시장점유율 변동지수를 통해, 시장점유율 변동이 큰(경쟁이 활발한) 품목일수록 기업이익율은 낮고, 또한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큰 만큼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앞으로 더욱 많은 품목에 대해 구매자의 집중도나 순위 및 시장점유율 변동지수를 측정하여, 경제학자와의 공동연구를 포함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 분석을 하여, 이것들이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 가능해 지도록 한층 더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2003. 6. 6.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공공조달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개최

공공 공사를 둘러사고 불미스러운 일이 빈발함에 따라, 공공 공사 입찰·계약적정화법이 2001년 4월에 시행되어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가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법운용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입찰담합 사건 처리현황을 보아도 동 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가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치건수에 있어서 입찰담합 사건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공공 공사의 발주 등 공공조달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현재의 경쟁입찰제도가 가격에 의한 평가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등 회계제도나 그 운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입찰담합의 방지에 적극적인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입찰담합에 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조달을 둘러싼 문제들에 직면하여 공공조달에 있어서 한층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입찰담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조달에 있어서 근본적이며 구체적인 과제들을 골라내어 이를 해결코자 “공공조달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이 연구회는 카네코 아키라 회장(케이오 기쥬쿠 대학교 명예교수)을 중심으로 하여 모두 1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회에서 검토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찰계약에 있어서 경쟁의 실효

성 확보

- 발주안건의 내용에 맞는 유연한 입찰계약 방법의 촉진
 - 형식적인 경쟁입찰의 배제
 - 가격 중시의 계약자 선정방법의 다양화
 - 벌주의 기획, 관리능력을 지원하는 벌주방법
- 입찰계약의 경쟁성 향상
 - 벌주자의 자의성 배제
 - 조인트벤처, 분할 벌주의 적정화

2. 입찰담합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엄정한 대처

-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체제의 정비 및 적정한 조사의 확보
- 입찰담합에 대해 벌주자측에서 강구할 수 있는 조치
- 벌주자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휴 또는 협력의 기본 방침

한편 이 연구회는 지난 6월 3일에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올 가을에 중간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다.

2003. 6. 6. 공정거래위원회